

중소기업청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청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의안번호 제2014-102호)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결·권고함에 따라 「중소기업청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중소기업청 훈령 제267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사고발 기준 강화(제3조 및 제5조)

- 고발유예 규정삭제(제3조 제1항 단서 삭제)
- 직무관련 부패행위 고발기준을 강화(제3조 제1항 7호에서 8호까지 신설)
- 의무적 형사고발 대상확대(제3조 제2항 4호에서 6호까지 신설)
- 범죄혐의 명백시 의무고발 규정 도입(제5조 제1항 단서 수정)

나. 공직유관단체 등의 지침 시행(제9조)

- 공직유관단체에 이 지침의 준용하여 제정·시행토록 지시

다. 기타 규정의 명확화(제3조 및 제6조)

- '고의 또는 과실 등'에서 '등'을 삭제하여 자의적인 판단을 금지토록 함

- 고발처리 현황 관리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

3. 의견제출

중소기업청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 감사담당관
(전화 : 042-481-4339, Fax : 042-472-3266)

- 별첨 1. 중소기업청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개정(안) 전문 1부
2. 중소기업청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1부